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8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김재섭ㆍ이종배ㆍ이종욱

박정하 • 주호영 • 김상욱

고동진 • 박충권 • 박준태

조은희 · 천하람 · 진종오

박수민 · 조지연 · 이소영

한지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 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'쉴 겨를'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'일을 쉰다'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,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 가 폄하되고 있음.

이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,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

고자 함(안 제60조, 제74조 등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6항제3호 중 "육아휴직으로"를 "집중육아로"로 한다.

제74조제1항 전단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93조제8호 중 "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"을 "필수전후육아·집중육 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제2호 중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 한다.

②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출산휴가"를 각각 "필수육아"로, "육아 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9조제1항제10호 중 "산전·산후 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, "육 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1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⑤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제7호의2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1호·제2호, 같은 조 제3항·제4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1호·제2호, 같은 조 제5항·제6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91조의24제2호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⑦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마목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⑧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7항제4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5장제1절의 제목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70조의 제목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육아휴직을"을 각각 "집중육아를"로, "출산전후휴가기간과"를 "필수전후육아기간과"로,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"로,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기를 "집중육아기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·제3항·제4항 및 제5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기로 한다.

제71조의 제목 중 "육아휴직의"를 "집중육아의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73조의 제목·제1항 및 제2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·단서 및 제5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하다.

제73조의2제1항 중 "출산전후휴가기간과"를 "필수전후육아기간과"로 한다.

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하

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"육아휴직"은"을 ""집중육아"는"으로, 한다.

제5장제2절의 제목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5조의 제목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,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5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6조의2제1항 중 "출산전후휴가기간"을 "필수전후육아기간"으로,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7조제1항 전단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, ""육아휴직"은"을 "'집중육아"는"으로,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

항 후단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, ""육아휴직" 은"을 ""집중육아"는"으로,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77조의4제1항 단서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 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7조의9제1항 단서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 제77조의10제3항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"육아휴직"은"을 ""집중육아"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80조제1항제3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87조제1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90조제1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106조제3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107조제1항제4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110조제1항제10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112조제1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116조제1항제3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⑩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7호의2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, "육아휴직제"를 "집중육아제"로 한다.

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나목 중 "출산휴가제"를 "필수육아제"로, "육아휴직제"를 "집중육아제"로 한다.

③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육아휴직제"를 "집중육아제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	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	6
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	
으로 본다.	<u>.</u>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	3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	
9조제1항에 따른 <u>육아휴직으</u>	<u>집중육아로</u>
<u>로</u> 휴업한 기간	
4.•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사용자	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
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	
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	
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	
한 경우에는 120일)의 <u>출산전</u>	<u>필</u> 수전후육아
<u>후휴가</u> 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	
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	
45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	
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	
되어야 한다.	
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은 유급으로한다. 다만, 「남녀고용평등과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후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책임을 면한다.
- ⑤ (생략)
-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<u>출</u>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에 복귀시켜야 한다.
- ⑦ ~ ⑩ (생 략)
- 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 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~ 7. (생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4
٠
<u>필수전후육아</u>
 ⑤ (현행과 같음)
⑥
수전후육아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ll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 -
 1. ~ 7. (현행과 같음)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
-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・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. ~ 13. (생 략)
- 8.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8. 필수전후육아ㆍ집중육아----
 - 9. ~ 13. (현행과 같음)